

-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남재경 의원 외 11명

나. 의안번호 : 제1178호

다. 제출일자 : 2016. 5. 4.

라. 회부일자 : 2016. 5. 13.

### 2. 제안사유

- 현행 「도로교통법」은 횡단보도 10미터 이내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운전자들의 불법주차 관행 및 인식부족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
-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·정차로 인해 통학로가 좁아지거나, 시야가 가려지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바, 조례의 개정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문화 개선과 안전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인 곳의 주·정차를 금지하고, 이에 대한 안내 및 단속 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(안 제7조의2)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 : 「도로교통법」

나. 예산 조치

- 대 상 : 어린이보호구역(1,704개소)
- 기 간 : 2017년도부터 10년간
- 총사업비 : 670억 19백만원

나. 입법예고

- 기 간 : 2016.5.18.(수)~25(수)
- 의견없음

다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- 서울시장(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) : 원안 동의

## 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김동수)

### 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·정차가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 보도 10미터 이내에서의 주·정차를 금지하는 한편 이에 대한 안내 및 단속을 위해 신호기, 안전표지 및 무인카메라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
### 나. 검토 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안내 및 단속 등을 위한 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

현행 「도로교통법」에서 이미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고<sup>1)</sup>,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통학로가 좁아지거나 안전사고 위협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

또한 동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에서 규정한 정차 및 주차 금지사항에 대해 운전자의 인식을 환기시키는 것으로 시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아님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<sup>2)</sup>에

---

1) 「도로교통법」 제32조(정차 및 주차의 금지)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. (이하 생략)

**5.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**

2) 「대한민국헌법」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·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,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.

## 도 부합한다고 할 것임

-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·정차금지 안내 및 단속을 위해 시장의 신호기, 안전표지 및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·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

「도로교통법」<sup>3)</sup> 및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<sup>4)5)6)</sup>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등의 다양한 재정조치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

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

- 한편,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서울시장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‘원안동의’<sup>7)</sup> 의견을 제출하였음

---

3) 「도로교통법」 제4조의2(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) ②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교통안전시설"은 "무인 교통단속용 장비"로 본다.

4)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5조(보호구역의 지정·관리에 따른 재정 조치) 시장등은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5)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6조(교통안전시설의 설치) ③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**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**

6)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7조(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) ② 시장등은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**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**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7) 보행자전거과-7006(2016.5.20.)